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송영선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⑤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송 영 선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Australia

연구자 : 송영선(전문연구원)
Song, Youngsun

2016. 11.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5
제 2 장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	7
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	11
I 아동보호 통합정책 및 추진체계	12
1. 아동보호 통합정책	12
2. 아동보호 추진체계	13
3. 아동 보호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15
II 아동보호 관련 일반 원칙 및 관련 법령	17
1. 일반원칙	17
2. 아동·청소년법 2008	17
3.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	20
4. 아동 권리 보호 협약	22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23
I. 아동학대 예방제도	23
II. 각주의 아동학대 감시제도	25
III. 아동의 안전 및 돌봄을 위한 교육	26
1. 기본원칙	26
2. 교육의 내용 및 목적	27
IV.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기관	29

제 5 장 시사점 31

참 고 문 헌 33

제 1 장 연구의 목적

- 호주 가족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아동복지로,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의 주변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하며 나아가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는 이해에 뒷받침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장기기본계획 하에 아동의 학대 예방, 학대발생시 신고 및 처벌, 사후 감시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국가인 호주의 경우 주법 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에서도 아동복지에 관한 계획,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과 예방 및 감시에 대한 각각의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선진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의 관련 법제 개선시 참고하고자 함.

제 2 장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

- 호주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소년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혹행위¹⁾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시위가 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이 요구됨.
- 호주 정부는 191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아동학대’ 혹은 ‘아동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호주원주민(에버리진)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백인가정에 입양시키는 원주민 동화정책을 실시하여 수많은 비극을 양산함.²⁾
- 이상의 역사적 배경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원주민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아동학대 보고제도가 신중히 적용되어야 함.
 - * 호주 아동보호 관련 신고 건수는 각주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호주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대처방법

1) 2016. 7. 30. 노던테리토리 준주. 돈 데일 소년원(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의 아동학대 : 14세 소년에게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결박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독방에 구금 학대함(한호일보 2016. 8. 1).

2) 호주 사회에서 의무 아동학대 보고 제도를 신중히 다뤄야 해야 하는데 그는 호주의 역사에서는 ‘빼앗긴 세대’라는 역사적 비극이 있기 때문임. 약 30여 년 전 호주 정부는 ‘아동학대’ 혹은 ‘아동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주민 가족들을 해체 시켜 그들에게 수많은 비극을 주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역사 때문에 고통 받는 원주민 가족들이 있음. 당시 수많은 원주민 아동들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음.

제 2 장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

Table 2: Number of substantiations, states and territories, 2009-10 to 2013-14

Year	NSW ^a	VIC	QLD ^b	WA ^c	SA	TAS	ACT	NT	Total
2009-10	26,248	6,603	6,922	1,652	1,815	963	741	1,243	46,187
2010-11	18,596	7,643	6,598	1,907	2,220	1,225	636	1,641	40,466
2011-12	23,175	9,075	7,681	2,759	2,139	1,025	861	1,705	48,420
2012-13	26,860	10,489	8,069	2,915	2,221	1,035	720	1,357	53,666
2013-14	26,215	11,952	7,406	3,267	2,737	778	449	1,634	54,438

- 가정폭력은 호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행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현재 호주 법률 및 사회규범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도움을 규정하고 있음.
-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가정폭력을 한없이 방치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법이 개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임.
-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의 위협 및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열거하면,
 - = Police Victims of Crime Co-ordinator/경찰
 - = Domestic Violence Advocacy Centre/보호기관
 - = Chamber Magistrate(Local Court)/법원
 - = Solicitor/변호사
 - = Dept. of Social Security/사회보장성 등등

○ 아동성폭행(Child Sexual Assault)

- 아동이 성폭행 피해자일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기타 Sexual Assault Centre 또는 의료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여야 함.

-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바로 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가능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를 진행함.
- Police Victims of Crime Co-ordinator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접촉해야 함.
- 호주에서 부모의 자녀체벌은 형법에 저촉되는 불법으로, 연약한 아동을 때리는 것 자체를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법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함.
- 현재 호주의 사법체계에서는 아동 체벌은 아동 학대죄에 해당되어, 일반 폭력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
- 아동에게 잘못이 있어도 이는 체벌대상이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보호대상이 됨.
- 따라서 아동이 매를 맞은 흔적이 발견되면, 이를 발견한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는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의무 불이행 시 직무유기가 됨.
- 부모의 체벌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혹은 훈방되지만 타인에 의한 체벌은 중벌에 처하고, 부모의 경우도 체벌이 반복되면 자녀양육권 박탈, 접근금지 됨.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필요시 아동을 사회복지사나 일반가정에 위탁 양육하도록 함.

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

- 호주는 연방법 체계와 주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주마다 조금씩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주마다 다른 수준이나 정도의 아동학대 현황 때문임.³⁾
- 호주는 아동보호중재를 각 주정부 내 지역사회담당 정부부서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음.
 - 특히 FaCSIA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조기중재를 실시,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이를 위해 직/간접의 다양한 아동학대방지와 예방프로그램들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제휴를 권장하는 아동조기지원대응 프로그램들, 아동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활동이나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아동보호정보센터 프로그램들,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 그 외에 육아를 맡는 친인척에 관한 보육조사와 연구프로그램들 등이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세계선언에 서명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호주는 아동보호 기본계획(2009-2020)을 수립하고, 부문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서 아동복지 개선에 추진하고 있음.

3) 특히 NT 지역은 원주민 인구의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의 아동학대 정의를 다른 주들에 비해 높게 정의해 두고,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의 공권력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함.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는 현대 호주 사회가 정의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임.

I. 아동보호 통합정책 및 추진체계

1. 아동보호 통합정책

-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기존 아동보호 법령 및 체제의 한계에 대한 범국가적 우려 증가
 - 매년 6만 여건의 아동학대 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의 통계치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다변화 되고, 아동복지 및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 아동학대 유형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감(성)정적 학대 및 무관심/방치, 신체적 학대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파악됨.
 - 유형별 아동학대 수치에서 성적학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된 데는 사건의 특성상 신고되는 빈도가 희박하고 사건의 조사 및 입증의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아동보호에 있어 사고 발생 후 이의 조사 및 후처리를 통한 대응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복지/보건/행복 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 아동들의 안전 및 보호 의무가 관련법령의 제정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국한되어 부과되지 않고, 학부모, 지역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통념 조성

- 이에 따라,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부간(연방↔주↔지방), 민관간(정부↔기업) 통합적 공조 운영체제가 수립됨.

2. 아동보호 추진체계

- 호주에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준·주정부 관할(Jurisdiction)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아동보호의 개념이 아동복지 및 안전으로 확대되면서 이의 정책수립, 시행, 지원 등 제반사항이 연방정부를 포함,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통합 관리 및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됨.
- 따라서 연방정부, 준·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아동보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교육) 및 사전중재(Early Intervention) 등에 힘쓰고 있음.
- 호주 국내외 전문가들은 호주의 아동보호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정부의 공중보건 모델 체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함.
- 공중보건모델(Public Health Model)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이 시행되면 통합적인 가족지원(예: 보건, 교육)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아동 학대에 대응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사전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부차적 아동보호서비스(예: 특별보호명령, 특별보호센터 송치 등)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운용됨.
- 공중보건 체제가 병원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법령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단계를 초월하

여 적극적인 아동의 안전보호 및 권익보장, 복지제공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공보건 모델을 도입하는 의의가 있음.

- 현실적으로 호주 아동복지체제는 피라미드형 보다는 모래시계형에 가까움.
-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종류 및 규모도 다양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취약한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
- 공중보건모델을 아동보호시스템에 반영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 및 방치 등이 발생하기 전 초기에 이를 중재하는 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두게 됨.
- 또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가 그룹, 가족, 지역 사회 등이 함께 다양한 정책 및 법안 도입에 적극 참가하게하고, 그 시스템을 보완·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음.
- 아동보호 정책에 공중보건 접근법을 채택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동학대 및 무관심을 줄이고, 취약한 가정 및 아동들에 대해 민관이 모두 정책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가장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통합 아동보호 정책은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및 중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동보호정책이 정부간, 민관간 통합적으로 대응되고 있으나 아동보호 법령안 입안 및 시행 의무는 여전히 준·주정부에 부여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주로 취약한 가정에 대한 각종 복지수당 및 지원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짐과 동시에, 주요 국가 프로젝트 시행 (정보수집 및 공유, 리서치 등)과 관련해서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구조로 운영됨.

3. 아동 보호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 부모 & 가정: 개별적으로 자기 자녀의 복지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의사결정 참여
- 아동: 자신의 권익 및 안전의 보호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가족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의 권익보장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NGO: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정책수립 과정 참가, 아동의 안전 보호, 권리, 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적극 홍보
- 지역기업: 가정친화정책 시행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각도의 지원 제공
- 경찰: 국선변호사 알선, 직접적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지방정부: 청소년 가족복지센터 및 지역 인프라 시설활용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에 취약한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독려

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

○ 준·주정부:

- 아동학대 및 무관심에 의한 방치 등을 사전예방하고 통합적이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 및 다른 서비스 및 정책 주체들에 대한 기금조성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운용
- 아동보호 체제 및 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보호관련 법령체제(입안, 시행 등) 운용 의무
- 기타 의무사항
 - = 아동보호 대상 가족 및 유아들에게 심적 치료 및 지원서비스 제공
 - = 아동보호 관련 리서치 실시
 - = 출산 및 아동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 경찰 및 사법 서비스 제공

○ 연방정부: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포함, 아동보육에 필요한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 연방정부의 지원에는 연금, 가정수당, 아동수당, 세금환급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가정지원금의 제공이 주를 이룸
 - = 국민의료보험(Medicare: 무료),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부모 지원 서비스, 가족관계서비스, 가정법원시스템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도 이에 해당
 - = 모든 주와 연계하여 병원, 학교, 주택, 장애인 보조 등과 관련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한 아동 및 가정을 타겟으로 한 정신보건, 중대한 학대, 집중 부모서비스, 집중 고용지원, 독립 청소년 지원 수당 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II. 아동보호 관련 일반 원칙 및 관련 법령

1. 일반원칙

- 모든 법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호주는 ‘의무 아동 학대 보고 제도’를 통해 호주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아동들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

2. 아동·청소년법 2008

-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학대와 성추행, 정신적인 고통, 심각한 수준의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연방법에 따라 아동학대 보고의무제도가 있지만 주마다 조금씩 다른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음.

(1)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개념정의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로 규정

-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 찢김, 골절, 장기 과열, 기능의 손상 등을 말하며 또한 충격, 관통, 열, 화학 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한 손상을 포함.
- 여하한 이유에서도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

2)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
-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
-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

3) 성적 학대

- 성적 학대는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으로 정의

4) 방임

-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유기, 장기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지 않거나 비난하고 무관심한 정서적 방임 등

(2) 아동학대로 부터의 보호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 퀸즈랜드 주 아동 훈육과 관련된 가정과 학교의 처벌이 문제가 됨에 따라 호주에서는 1989년부터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음.
- 1989년에 제정되었던 아동 청소년법을 1993년 개정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특정 전문 집단이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비교적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개입함.

○ 아동학대 신고제도

- DoCS는 아동학대 신고 및 NSW의 지원요청에 대해 대응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음.
- DoCS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안전상의 위협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만약 그렇다면 신고에서 제기된 즉각적인 안전문제들을 조사해서 위협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협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함.

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

- 신고 접수를 위해 142명의 전문훈련을 받은 사회 복지 사업원들로 구성된 도움신고전화(Helpline)를 운영하고 있으며, DoCS에 최초 신고된 95% 이상이 도움신고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합동조사팀 운영

- 호주에서는 JIRT(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라고 불리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 JIRT는 주정부에 속한 아동보호 전문상담원(Child Protection Case Worker), 경찰과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도모함.
-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로 다룸

3.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

○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설치

- 호주 연방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는 “연방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관련 조직, 기관 및 단체가 아동보호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사회적 대책마련의 중요한 전기가 됨.

○ 아동학대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애로사항

- 아동학대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절대적 증거확보가 어렵고, 개인증언에 의존).
- 조사내용과 과정에 대한 위원회와 여론간의 조율이 쉽지 않음.

II. 아동보호 관련 일반 원칙 및 관련 법령

- 아동관련 기관과 관련 종사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활동에 대한 불신감 조성되지 않도록 민감한 주의가 요망됨.
- 아동관련 기관과 단체종사자들의 자격심사(기본적인 수준의 아동지도자 윤리자격검사나 관리, 아동관련 단체가 적절한 (공공 피해)보험에 가입하였는가) 및 관련법 적용 강화 필요함.⁴⁾

○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제공됨.
-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의 안전에 위협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독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함.
- 아동의 격리 및 가정 복귀는 아동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기 보다는 주로 가정위탁에서 보호됨.⁵⁾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됨.

4) 최근 호주의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위원장 피터 맥클래렌은 향후 위원회의 과제로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하여 증언수집시 6명의 조사위원 중 일부만 참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비밀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현재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임(호주동아일보 2015. 12. 30.)

5)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1년에 평균 9,0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의 아동이 친인척에게 위탁보호되고 있음

4. 아동 권리 보호 협약

○ UN의 아동 권리보호 협약(UNCRC1989)

-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지향해 줄 의무가 있음.
-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을 당할 경우 아동의 주변인들이 의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임.
- 아동보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호임.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I. 아동학대 예방제도

○ 블루카드제도의 도입⁶⁾

-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대상 근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위기관리제도임.
- 법적 근거에 따라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접근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블루카드를 발급함.
- 아동대상 관련기관 복무자들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의 완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 및 이행을 의무화함.

○ 블루카드제도의 내용

- 검사 : 경찰정보 및 기존의 징계정보에 근거하여 아동대상 근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아동 보호 및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블루카드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아동관련 복무를 금지함. 무자격자의 블루카드 신청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5년 징역 혹은 최고 55,000달러의 벌금에 처함.
- 모니터 : 블루카드 신청자 및 소지자에 대한 경찰정보를 모니터

6) 블루카드 제도는 퀸즈랜드 주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상세한 내용은 정현주,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6 참조; 아동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법(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 참조.

하여, 정보변경시 카드발급 유보 및 카드취소.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취함.

- 블루카드 소지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검사함.
- 블루카드 피대상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의 위리관리전략을 개발·수행 관리해야 함.

○ 블루카드제도의 적용대상자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학부모 이외의 자원봉사자,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자, 아동관련 활동의 수행자는 필수(아동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법(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
- 아동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민원을 접수·해결·모니터·조사하도록 기능함.
-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24시간 Hot-Line 운영

- 주정부는 아동학대사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Hot-Line을 운영하고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함.
- 민간기관이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함.

II. 각주의 아동학대 감시제도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방단위의 노력이 뒷받침 되고 NAPCAN과 같은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연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퀸즈랜드 주
 - 블루카드제(Blue Card System)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직무나 활동을 담당하는 고용인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경찰 정보 등과 연동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
- 뉴사우스웨일즈주
 - 아동 관련 근무자나 봉사자를 대상으로 5년간 범죄 기록과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점검함.
 - 뉴사우스웨일즈주에 85개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 접수 시 지역사회서비스센터나 DoCS 공무원/경찰이 함께 하는 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에 조사를 의뢰하고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사정함.
 -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및 가해자에 대한 이후의 개입까지를 담당함.
 -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해 다른 서비스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CAPS, Anglicare, Dympna House 등)에 의뢰함.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중복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우선임.
- 빅토리아주
 - 아동대상 업무종사자에 대한 조사·점검 실시(Working with Children Law 2005)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 노던준주
 - 아동대상 업무종사자로 검증되었음을 통지하고 황토색카드를 발급 (Ochre Card)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주정부의 커뮤니티 사회통합부에서 유사한 조사제도를 수행
- 타스마니아
 - 여타 주와 같이 제도개편. 2014. 7. 1~ 2016 아동관련 직무나 활동 수행을 위하여 신규 등록하도록 함.
- ACT
 - 취약계층 대상 복무법(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Law 2011)으로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위험과 방치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무자를 등록·관리
 - 대상자에게 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를 교부함.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 블루카드와 유사한 점검제도를 시행

Ⅲ. 아동의 안전 및 돌봄을 위한 교육

1. 기본원칙

- 아동의 안전 및 보살핌에 대한 권리 및 인격적 존엄성 존중
 - UN 아동보호 조약 서명국으로서 필요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참가 장려 및 긍정적 성과 도출과 관련한 책무의 성실한 이행

- 아동들의 학대 및 무관심한 성장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들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고 아동 및 가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
- 아동의 안전 및 복지 개선이 국익과 일치함을 인지
- 아동의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1차적 의무는 가정에서 분담하며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의 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
 - 아동의 보호의무 실행에 있어 부모, 가정, 제3자간의 파트너쉽 중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제공
 - 아동들의 권익이 사회 구조적으로 유관기관들에 의해 통합 지원됨.
 - 아동들의 권익 및 안전보호는 관련법령 및 정부 정책과 사전예방(중재) 등을 통해 보호됨.

2. 교육의 내용 및 목적

-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판단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
- 아동건강, 발달, 복지수준
 - 최근 3년 기준 아동구출 건 및 병원 외래기록 횟수
 - 아동보호법령 위반 사례 통계치
 - 아동보호시설 위탁 관리 건수
 - 아동학대 빈도 감소
- 아동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원받는 생활환경 조성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 아동과 가족들의 안전홍보 및 교육, 사전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고취
- 아동학대 및 방치/무관심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
- 아동학대 및 방치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 및 복지 서비스지원 제공
- 아동 성학대 및 착취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감찰 및 지원서비스 제공

IV.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기관

○ 주정부 : 사회서비스부

- 호주는 주정부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하에 지역사회서비스센터와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주무부처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금을 지원하고, 아동보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 차원의 지원을 함.

○ 지역사회 관련기관

- 호주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응급한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력은 아동의 안전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호주 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관련 혹은 건강관련 전문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전문직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직으로, 특히 소셜워커나 케이스 워커로 불리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NAPCAN)가 설립

- 1987년 민간단체인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NAPCAN)가 설립되는 등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활발한 개입이 전개되고 있음.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 NAPCAN는 우선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동양육에 있어 지지적 행동을 격려하며 예방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 함.

제 5 장 시사점

- 호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보호정책 시행에 있어 법령 및 감시 등의 조치를 통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의 아동보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보호가 정부만의 의무사항으로 인식되지 않고 개개 가정, 지역 사회 및 NGO 등의 관심 및 적극적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범국가적 공감대가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용적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
- 아동보호 신고접수 건에 대한 유죄입증 절차의 정비 및 민관간 통합적 참가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확대 및 보호조치 등의 다양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평가할 수 있음.
- 통합적 정책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가정지원책(재정적 지원 위주)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아동보호 및 권익신장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책이었다고 평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통합적 정책시스템 구축과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참여적 아동보호방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 5 장 시사점

관련법령 정비에 신고의무자의 확대, 아동학대 조사위원회의 기능, 향후 지속적인 감시 및 예방교육 등의 세부내용은 부문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강은영. 김희균,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서문희, 호주의 보육관련 법과 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제2호.

장혜경 외 5인,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6.

정현주,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6.

여성가족부,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 정책 및 활동, 2013. 12.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A2008-19 Republication No 54)

ACT Government Community Services, Keeping Children & Young People safe, 2014. 11.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4-2015.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 - 2020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ublications-articles/protecting-children-is-everyones-business?HTML#sec2_outcome3)

Child abuse and neglect statistics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child-abuse-and-neglect-statistics>)